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29일

권선1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석 *수	석 *수 1987- 04- 25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9번길 (권선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 10- 28
이 *궁	이 *궁 1980- 02- 25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94번길 (권선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 10- 28